

## 書類提出効力發生時期

〈日本最高裁 1981年 4月 2日判決 1980年(行ッ)156號〉

1. 上告人: X

2. 被上告人: Y(特許廳長官)

3. 判決主文

當事者間の 東京高法 1980年(行ッ)92號 審決取消請求事件에 대한 同法院의 1980年 9月 29日 言渡判決에 대하여 상고인으로 부터 全部破棄를 要求하였으나 이 上告를 棄却한다.

上告費用은 상고인의 負擔으로 한다.

4. 事件概要

特許出願人인 上告人이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請求書를 登記郵便으로 提出한 바 相對인 特許廳의 住所가 發明協會로 記載된으로써 잘못 送達되었다. 이 때 發明協會는 審判請求書를 「郵便物에 當協會의 所在地가 기재되어 있기때문에 審判청구서가 당협회에 송달되었으므로 특허청앞으로 보내기 바란다」는 뜻과 特許廳所在地가 기재된 案内書를 同封하여 原告에 우편으로 返送하였다.

상고인은 審判請求期間經過後에 審判청구서를 다시 특허청에 郵送하였다. 상고인의 主張인 즉 登記郵便物受領證으로서 특허청에 提出한 우편물이 있었음은 明白하며 當時의 狀況은 審判청구서와 重複되는 登記에 의한 우편물은 없고 書

類發送案内에 따라 發明協會에 1976年 8月 26日着으로 되어 있는 우편물과 같은 審判청구서가 있을 뿐이므로 이는 1976년 8월 24일에 審判한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.

또 상고인은 우체국에 의한 過失與否를 따지면서 이 事案은 우체국이전인 1976년 8월 24일에 審判청구를 했느냐의 여부가 爭點이 되고 있는데 그 爭점이 되고 있는 사실을 誤解하고 있으며 釋明書, 通知書, 訴狀答辯書등으로 特許廳內에 定해져 있는 審判청구서는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청구서인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.

이같이 高法이 誤診에 의한 判결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證據등으로 미루어 특허청에 우편물을 보내는 審判청구서의 제출은 사실이며 1976년 8월 24일 제출의 우편물은 特願 44-63755號의 審判청구서이므로 特許法上 發信主義와 審判청구후의 30日間은 審判청구서의 補正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 이같이 1976년 8월 24일짜의 審判청구사실이 判明된 이상 1976년 8월 31일짜에 審判청구서를 제출했어도 違法이 아니므로 最高裁에서 特許法上規定을 解除해 달라고 상고한 것이다.

그러나 이에 앞서 특허청은 원고의 청구를 却下한다고 審決하였다.

判示要旨인 즉 本件은 特許法上의 歸責할 수 없는 理由에 의해 所定期間內에 審判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경우에 該當되지 않는다. 특허법상의 書類提出効力은 當該郵便物受取人住所나 居所 또는 事務所등을 正確히 또는 實質적으로 同等하게 理解할 정도로 기재하였을 때 비로소 發生한다고 解釋함이 妥當하다는 것이었다. 이에 대해 상고인은 最高裁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.

5. 判決要旨

상고인의 上告理由에 대하여 原審이 그 適法적으로 確定한 事實에 의거하여 상고인이 1976年 8月 24日 本件에 關聯되는 審判청구서를 內容으로 하는 우편물을 郵便局에 提出한 것으로서 特許法에 의거한 이 郵便物提出日에 이 審判청구서가 특허청에 到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判斷은 正當하다고 是認할 수가 있으며 原判決에 所論의 違法이 없다. 論旨는 採用할 수가 없다. 그러므로 行政事件訴訟法 및 民訴法에 따라 裁判官 全員一致의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